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4.06.03.

부분개정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보유한 데이터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기관 내 활용, 기관 외 제공, 결합신청, 가명처리의 적정성 검토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명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를 제2호에 따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 "가명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병원은 데이터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명정보의 기관 내 활용에 관한 사항
- 가명정보의 기관 외부 제공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가명정보의 결합신청에 관한 사항
- 가명처리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명·익명정보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데이터 관련 주요 사항

제5조(구성)

- 위원장 및 위원은 한림대강남성심병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이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 위원은 해당 심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소속 기관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정에 의해 2년 미만 재직 중인 교직원 또는 외부인을 위촉할 수 있다.
- 제1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
 - 정보 주체를 대변하는 자 1명 이상
 - 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1명 이상
 - 정보보호 또는 법률 분야 전문가 1명 이상

제7조(임기)

1.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조직)

1.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2.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사무를 처리한다.
3.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4.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회의소집 및 의결)

1. 위원회 회의는 정규 심의 일정에 따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장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 신청인의 출석 또는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직접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신청자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있는 사람은 당해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7.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서에 따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결의에 응하고 그 서면결의에 응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심의안건별로 내/외부위원에게 심의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 별도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회의비 또는 자문료를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위원회 논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 정보 주체가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개한다.

1. 운영규정
2. 심의 안건 목록
3. 심의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회의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2. 회의자료 등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에 대한 유출 금지
3. 특정기관 또는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 금지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4.06.03. 제정)

이 규정은 2024년 06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7.01. 부분개정)

이 규정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